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재나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자 2022재나63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3596 판결

전 문

원고(재심원고)A

피고(재심피고)1. B

2.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3. 4. 12.

재심대상판결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359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항소 취지 및 재심 청구 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D에게

재심대상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각 1/2씩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16246, 16247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9. 12. 24.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5143)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8.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20. 9. 7. 항소(대구지방법원 2020나3596)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21. 9. 8.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D와 피고들은 여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관할을 달리하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동일한 D 명의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4901호로 2017. 10. 13. 일부개정된 것) 제25조 단서규정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759호로 2017. 11. 16. 일부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과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부터 위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심의 소가 위 재심 제기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다카13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21. 8. 24. 원고에게 송달되고, 2021. 9. 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22. 8. 9.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세진

판사윤남현

판사정세영